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공공수역에 폐수를 직접 방류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에 3천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을 조업정지일수에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11월 24일

국무총리 정 세 군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조 명 래

●**대통령령 제31187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1조제1항”을 “법 제11조”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를 말한다.

1. 가속도지진센서
2. 속도지진센서
3. 지진기록계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측 장비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검정신청 대상 관측 장비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이란 기상청장이 검정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제5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란 별표 1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말한다.

제13조 중 “법 제30조제1항”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중건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제5조의3 관련)

1. 인력요건

내용	인원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위 취득자 또는 자격 소지자 1) 지진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소지자 2) 지진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지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진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지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지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이 3명 이상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1) 법 제11조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업무경력 2)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 업무경력 3)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의 교정 업무경력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 또는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구 또는 기관에서의 시험·검사 업무경력	

2. 설비요건

- 가. 기본 검정장비를 갖추는 것
- 나. 이동식 검정장비를 갖추는 것
- 다. 기준기(基準器)를 갖추는 것

비고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의 성능·규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않은 관측 장비를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	300	500	1,00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 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	150	250	50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를 통해 관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가 그 관측 장비를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2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가속도지진센서, 속도지진센서 및 지진기록계를 검정 대상 관측 장비로 정하고,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진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등 3명 이상의 인력 및 기본검정장비·기준기 등의 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에 관한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11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1188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비용”을 “금액”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제부금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운영에 드는 금액
- ②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발주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다른